## (하도급)공정거래 협약서

(2016, 12, 23)

(주)원익아이피에스(이하 "원익아이피에스"라 한다)는 협력사 코스텍시스템(주)(이하 "협력사"라 한다)와 거래를 함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"(하도급)공정거래협약"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 이 협약은 원익아이피에스와 협력사간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통해 상호 경쟁력 제고,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증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법률 준수) 원익아이피에스와 협력사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와 상생협력을 위하여 "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(이하 '하도급법'이라 한다)" 등 하도급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.

제3조 (4대 실천사항 준수) 원익아이피에스는 협력사와의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(이하 "공정위"라 한다)가 제정·개정한 "하도급 법규의 준수를 위한 4대 실천사항"을 도입하여 성실히 이행한다.

- ① "대·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"을 도입, 준수하여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이행단계 전반에 걸쳐 공정한 거래 를 한다.
- 1.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결정하고, 긴급발 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한 경우에는 협력사와 협의를 거쳐 합의
- 2. 원자재가격 인상, 환율변동 및 물가인상 요소 반영 등 합리적인 단가산 정·조정방식에 의한 거래대금의 결정 및 조정(납품대금 조정기준 및 절차 도입)
- 3. 부당한 감액행위의 금지 등







- ②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력회사 선정운용(등록변경)을 위하여 "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(등록)을 위한 실천사항"을 도입·준수한다.
- 1. 협력회사 선정(등록) 및 취소기준의 공정성, 투명성 보장(기준, 절차 공개)
- 2. 협력업체 선정(등록) 심사결과의 통지
- 3. 협력회사에 대한 공평한 입찰 참가 기회의 부여 등
- ③ 불공정 거래행위의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"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"을 도입·운용한다.
  - 1.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구성(하도급거래담당 임원 포함 3인 이상)
- 2. 58억원 이상의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등에 대해 사전심의
- 3. 협력회사 선정, 등록,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심의
- 4.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등
- ④ 하도급거래에서 서면발급 및 보존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"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"을 도입·운용한다.
  - 1. 하도급계약서(추가·변경계약서 포함), 하도급계약 확인서면, 목적물 등수령증명서, 검사결과 통지서, 감액 서면,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,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등 7개 서면에 대해 발급
  - 2. 제1호의 7개 서면 외에 원자재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,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,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,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·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등 7개 서면에 대하여 하도급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3년간 보존

제4조 (공정한 계약 체결·이행) 원익아이피에스는 협력사와의 공정한 하도 급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.

- ① 계약이전 주요정보 사전알림시스템 구축
  - 이 위탁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예정 사실·물 량·납기 등 위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일정한 수단을 통해 미리 알리는 시스템







ㅇ 일정 거래금액 이상의 계약건에 대해 지급기한 내 대금지급 여부, 하자 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발생여부를 점검 및 시정

③ 법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제공

**제6조 (협력사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사항)** 협력사는 원익아이피에스와 하 도급 거래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력 방안 이행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.

-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계약 이행
- ②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, 원가절감, 물류혁신 노력 제고
- ③ 원익아이피에스의 윤리실천특별약관 준수 등
- ④ 원익아이피에스의 2차 협력사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성실한 이행 및 협조
- ⑤ 기타

제7조 (협약기간) ① 본 협약의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. 다만, 협약기간 중 거래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거래종료일을 협약종료일로 본다.

② 협약기간 만료시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있다.

제8조 (법적 성격) 이 협약은 원익아이피에스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협약 당사자인 협력사들에게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의지를 선언하는 것으로 서 법적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며, 어느 일방의 협약위반을 이유 로 상대방 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민·형사 또는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 절차를 제기할 수 없다.

제9조(협약기준 준수) 원익아이피에스와 협력사는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정위가 정한 "대·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"을 성실히 준수한다.







제10조(세부이행계획 및 평가자료) ① 원익아이피에스는 협약체결 후 20일이내에 협약서 사본, 협약체결 협력사 명단 및 협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이행계획을 공정위에 제출한다.

② 원익아이피에스는 협약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협약내용의 이행평가를 위한 협약내용 이행실적 자료를 제출한다.

2016년 12월 23일

(중견기업)

(협력사)

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

코스텍시스템 주식회사

대표이사 변정우 (일)

대표이사 배준호 (인)

